



전 라 북 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운용 안내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78(2015.1.29.)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 “입찰의 무효”에 대한 운용상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이를 바로잡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 “입찰의 무효” 제13호 “입찰서 및 제출서류를 그 도착일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나. (기준해석) 최저낙찰제의 경우 제출서류 미제출은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나, 적격심사제의 경우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제출서류 미제출은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면 됨

다. (변경사유) 낙찰방법에 따라 무효 해당 여부가 달라 일선의 혼란이 발생하고, 적격심사 시 업체에서 ‘행정처분 확인서’와 같이 불리한 서류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적격심사 취지가 저해됨

라. (해석변경) 낙찰방법에 상관없이 지침에 명시된 대로 입찰공고문에 제시된 제출서류 미제출 시 입찰의 무효에 해당. 끝.

전 라 북 도 자 사



수신자 전주시장(주택과장), 군산시장(건축과장), 익산시장(주택과장), 정읍시장(건축과장), 남원시장(건축과장), 김제시장(건축과장), 완주군수(도시개발과장), 진안군수(민원봉사과장), 구주군수(건강휴양도시과장), 장수군수(민원과장), 임실군수(민원봉사과장), 순창군수(민원과장), 정읍군수(민원봉사과장), 부안군수(종합민원실장)

주무관

이춘안

공동주택지원

팀장

소근호

주택건축과장

전결 2015. 1. 30.

이용민

협조자

시행 주택건축과-1505

(2015. 1. 30.)

접수 건축과-4197

(2015. 1. 30.)

우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http://www.jeonbuk.go.kr>

전화번호 063-280-3462 팩스번호 063-280-2359 / chalee57@korea.kr / 대국민 공개

쉽고 편리한 우리 집 새주소,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주소입니다. 「부패Zero! 클린전북!」



전 라 북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계약에 관한 유권해석 변경 안내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58(2015.1.13.)호와 관련입니다.

2. 그간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승강기 부품의 교체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로 집행하는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과 엄격히 구분하여 각각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유권해석을 유지·운영하여 왔습니다.

3. 그러나, 승강기 부품교체를 위한 경쟁입찰 진행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입주자등의 안전·편익이 취약해 질 우려가 있어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계약'에 관한 그간의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15.1.1)하였으니 이점을 관할 공동주택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 관련 민원업무 처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시 종합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근거(예: 입주자등의 안전·편익을 위하여 긴급히 승강기 부품을 교체해야 할 경우 등에는 유지관리 업체와의 계약이 가능)를 마련하고,

나. 승강기 종합유지보수업체를 선정·계약하는 것은 가능함(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부품교체 공사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고, 유지보수비용은 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이며 승강기 교체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끝.

전 라 북 도 자 사



수신자 전주시장(주택과장), 군산시장(건축과장), 익산시장(주택과장), 정읍시장(건축과장), 남원시장(건축과장), 김제시장(건축과장), 완주군수(종합민원실장), 진안군수(민원봉사과장), 무주군수(건강휴양도시과장), 장수군수(민원과장), 임실군수(민원봉사과장), 순창군수(민원과장), 창간수(민원봉사과장), 부안군수(종합민원실장)

주무관

이춘안

공동주택지원

팀장

이용민

주택건축과장

전길 2015. 1. 14.
최종엽

협조자

시행 주택건축과-682

(2015. 1. 15.)

접수 건축과-1872

(2015. 1. 15.)

우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http://www.jeonbuk.go.kr>

전화번호 063-280-3462 팩스번호 063-280-2359 / chalee57@korea.kr

/ 대국민 공개

쉽고 편리한 우리 집 새주소,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주소입니다. 「부패Zero! 클린전북!」

주택관리공단(주)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5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자문서비스 신청 안내

1. 귀 지자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지원센터)에서 2015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자문서비스 신청접수를 불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불임 자료를 참고하여 지자체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홍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happyapt.moli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5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자문서비스 신청 안내 1부. 끝.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주)



수신자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남구청장),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동구청장),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북구청장),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서구청장), 전라남도지사(강진군수), 전라남도지사(고흥군수), 전라남도지사(곡성군수), 전라남도지사(광양시장), 전라남도지사(구례군수), 전라남도지사(담양군수), 전라남도지사(목포시장), 전라남도지사(무안군수), 전라남도지사(보성군수), 순천시장, 신안군수, 여수시장, 영광군수, 영암군수, 완도군수, 장성군수, 장흥군수, 진도군수, 함평군수, 해남군수, 화순군수, 고창군수, 군산시장, 김제시장, 남원시장, 무주군수, 부안군수, 순창군수, 완주군수, 임실군수, 장수군수, 전주시장, 정읍시장

주임 김성 차장 2015. 1. 27. 부장 류재현 전용준 센터장 박종수

협조자

시행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 (2015. 1. 28.) 접수 건축과-3869 (2015. 1. 28.)
-107

우 440-83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128, 3층 / <http://www.kohom.co.kr>

전화번호 031-303-4344 팩스번호 031-303-4373 / ks2106@kohom.co.kr / 대국민 공개

2015년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자문서비스 신청 안내

□ 진단·자문서비스 개요

- 대상 : 주택법 시행령 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기간 : 2015년 3~6월(상반기 진단 40/자문 6개단지 실시 예정)
- 절차

신청·접수(2주간) → 대상단지 선정 → 대상단지 통보(일정협의)
→ 진단·자문 실시(현장 방문, 2~3일) → 결과통보(실시 후 2~3개월 이내)

□ 신청기간·자격·방법

- 신청기간 : 2015. 2. 2 ~ 2. 13
- 신청분야 및 자격

분야	신 청 자 격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직무대행이 신청하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입주민(전체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시·도 또는 시·군·구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직무대행이 신청하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관리사무소장

※ 세부사항은 센터 홈페이지(<http://happyapt.molit.go.kr>) 메뉴 - 관리업무진단 또는 공사기술자문 참조

- 신청방법
 - 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에서 필요 사항을 입력하여 신청하거나, 신청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 신청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또는 직무대행)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또는 직무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지자체 신고서 등)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회의록 등)를 첨부
- 입주민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 양식 및 동의서 양식을 내려 받아 해당 단지 전체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서를 첨부
- 지자체장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첨부하여 전자문서(수신:주택관리공단, 참조: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로 송부
-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배치 신고서 등) 첨부

※ 세부적인 신청단계는 센터 홈페이지(<http://happyapt.molit.go.kr>) - 정보광장
- 자료실 - 진단·자문서비스 매뉴얼(72번) 참조

○ 선정기준

-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 후 선정
 - 아래의 각 단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되, 시·도별 공동주택 단지수를 감안하여 지역별 안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진단, 자문)
 - 준공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노후화된 단지(진단)
 - 지자체에서 진단 신청한 단지(진단)
 - 그 외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진단이 시급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한 단지
- ※ 관리업무 관련 수사·재판 등이 진행 중인 단지는 제외

○ 기타 문의전화 : 031-303-4359, 4344



전 라 북 도

행복한
대안민국을 여는
정부3.0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안내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79(2015.1.29.)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기획재정부 소관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가 아래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Q&A를 붙임과 같이 알려왔기에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종전	개정(현행)
국민주택 규모 이하	<input type="radio"/> 영구면제	<input type="radio"/> 영구면제
국민주택 규모 초과	<input type="radio"/> '14.12.31까지 면제(일몰종료)	<input type="radio"/> 주거 전용면적 135㎡ 이하 : 일몰 3년 연장('17.12.31까지) <input type="radio"/> 주거 전용면적 135㎡ 초과 : 과세 전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면제)

※ 국민주택 규모 : 주거 전용면적 85㎡(비수도권의 읍·면 지역은 100㎡)이하

3.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44-215-4233)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동주택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Q&A 1부. 끝.

전 라 북 도 자 사



수신자 전주시장(주택과장), 군산시장(건축과장), 익산시장(주택과장), 성읍시장(건축과장), 남원시장(건축과장), 김제시장(건축과장), 완주군수(도시개발과장), 진안군수(민원봉사과장), 무주군수(건강휴양도시과장), 장수군수(민원과장), 임실군수(민원봉사과장), 순창군수(환경과장), 정진구(민원봉사과장), 부안군수(종합민원실장)

주무관

이춘안

공동주택지원

팀장

소근호

주택건축과장

이용민

전결 2015. 1. 30.

협조자

시행 주택건축과-1504

(2015. 1. 30.)

접수 건축과-4196

(2015. 1. 30.)

우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http://www.jeonbuk.go.kr>

전화번호 063-280-3462 팩스번호 063-280-2359 / chalee57@korea.kr / 대국민 공개

쉽고 편리한 우리 집 새주소,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주소입니다. 「부페Zero! 클린전북!」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내용 및 Q&A

1. 개정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의2호)

종 전	개 정(현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주택규모 이하 : 영구면제■ 국민주택규모 초과 : '14.12.31까지 면제(일몰 종료)※ 국민주택규모 : 주거 전용면적 85m² (비수도권의 읍·면지역은 100m²)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주택규모 이하 : 영구면제■ 국민주택규모 초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전용면적 135m² 이하 : 일몰 3년 연장('17.12.31까지)○ 주거 전용면적 135m² 초과 : 과세 전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면제)

-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한 면세제도의 취지에 맞게 면세범위 축소
 - 국민주택 초과 공동용역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다만, 전용면적 135m² 초과 대형주택(비수도권 읍·면지역 제외)은 과세 전환

2. 전용면적 135m² 초과 주택의 부가가치세 관련 Q&A

Q A 1 과세대상 용역의 판단은?

-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 경비원, 청소원을 직접 고용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Q A 2 일반관리용역을 위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는?

-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의 위탁관리의 경우 일반관리비 항목 중 위탁업체 소속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 일반관리비(주택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 인건비, 사무비, 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등
- 도급 형태의 위탁관리의 경우 일반관리를 위한 도급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Q_A 3 경비·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까지 직접 공급하거나 도급시 도급금액에 경비·청소용역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경비·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경비업자와 청소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 경비·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각각 경비업자와 청소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는 입주자(입주자 대표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Q_A 4 단지내 전용면적 135m²초과 세대와 이하 세대가 혼재한 경우는?

- 과세 전환 대상은 전용면적 135m²초과 공동주택이므로 면적 등 기준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한 135m²초과 세대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Q_A 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이란?

-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1호의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 * 해당 단지의 용도지역은 각 지자체 지적과 및 luris.molit.go.kr 통해 확인 가능

Q_A 6 부가가치세 적용 시기는?

- 2015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Q_A 7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 용역을 제공하는 위탁(용역)업체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 라 북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 의견 제출

1.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의뢰하여 의견을 수렴하오니

2. 시·군 및 협회에서는 관내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 및 입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의견이 있을 경우 2015. 2. 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제 정 (안)	검 토 (안)	사 유

붙임 : 공고문 1부.

전 라 북 도



수신자 시군 건축업무담당부서, 대한주택관리 전북지회장

주무관

이춘안

주택건축과장
이용민

진결 2015. 1. 16.

협조자

시행 주택건축과-801

(2015. 1. 16.)

접수 건축과-2282

(2015. 1. 19.)

우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http://www.jeonbuk.go.kr>

전화번호 063-280-3462 팩스번호 063-280-2359 / chalee57@korea.kr

/ 대국민 공개

쉽고 편리한 우리 집 새주소,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주소입니다. 「부페Zero! 클린전북!」

전라북도 공고 제2015 -46호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공동주택단지의 의결권 행사에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과 임대주택 단지 등 혼합단지의 공동주택 대표회의 및 의결사항은 주택법에 규정되어 삭제하고, 공동주택 단지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등 불이익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감사보고서에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여부 확인토록 하는 등
- 나.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된 주택법과 시행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사결정 전자투표 명시(안 제36조의 2)

-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임원선출, 공동주택관리방법 결정, 관리규약 개정 등 전자투표 방안 명시
- 나. 전자투표시 본인방법 확인(안 제36조의 3)

- 1) 전자투표시 이메일 휴대전화문자 등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와 터치스크린, 투표권카드사용, 세대내에 설치된 흘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자투표 기능 사용

다.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방법 삭제 (제8장, 제9장)

- 1)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내용은 주택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삭제
- 라.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여부 확인토록 감사보고서에 기재(안 제82조8호)

3. 의견제출

이 관리규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2월 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토지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3가 1번지)

전북도청 토지주택과 서민주택담당 (전화 : 063-280-3462, FAX : 063-280-2359)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도 홈페이지 자치법규)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토지주택과 공동주택담당자 이춘안(전화 : 063-280-34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 : 붙임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③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전자투표)법 제43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이하 전자투표)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전자투표시 본인확인 방법) 전자투표 시 영에 규정된 본인 확인의 방법 외 영제5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추가되는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9호에 따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3.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자투표 기능을 이용하여 “세대내”에서 투표하는 방법

제8장 (47조)을 삭제한다.

제9장 (48조 부터 49조)을 삭제한다.

제8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의사업에 대한 납세여부 확인 및 안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의결권 행사】 ① 생략 ② 입주자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 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
<신 설>	제36조의2 【전자투표】 법 제43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이하 전자투표)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의3 【본인확인 방법】 전자투표 시 영에 규정된 본인확인의 방법 외 영 제5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추가되는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p>시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9호에 따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p> <p>3.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자투표 기능을 이용하여 “세대내”에서 투표하는 방법</p>
제8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협의 (협의 경우)	<삭 제>
제9조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대표회의일 경우)	<삭 제>
제75조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1.~ 7. 생략 <u><신 설></u>	<p>제75조 【감사보고서 기재사항】</p> <p>1.~ 7. 현행과 같음</p> <p>8.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여부 확인 및 안내</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전 라 북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택단지 입구에 설치된 문주 실태 조사 제출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38(2015.1.22.)호와 관련입니다.
-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상당한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요즘 건설하는 공동주택 단지 출입구에 미관을 위해 문주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이 문주가 소방자동차가 각 세대로의 접근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협조를 요청하오니 관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주택단지의 문주 실태를 조사한 후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5.3.20(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단지명	위치	세대수	문주설치 개소	문주 규격(안목치수)	
				폭(m)	높이(m)

끝.

전 라 북 도 자 사



수신자 전주시장(주택과장), 군산시장(건축과장), 익산시장(주택과장), 정읍시장(건축과장), 남원시장(건축과장), 김제시장(건축과장), 완주군수(도시개발과장), 진안군수(민원봉사과장), 구주군수(건강휴양도시과장), 장수군수(민원과장), 임실군수(민원봉사과장), 순창군수(민원과장), 강진군수(민원봉사과장), 부안군수(종합민원실장)

주무관

이춘안

공동주택지원

팀장

소근호

주택건축과장

전결 2015. 1. 23.

이용민

협조자

시행 주택건축과-1156

(2015. 1. 26.)

접수 건축과-3263

(2015. 1. 26.)

우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http://www.jeonbuk.go.kr>

전화번호 063-280-3462 팩스번호 063-280-2359 / chalee57@korea.kr / 대국민 공개

쉽고 편리한 우리 집 새주소,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주소입니다. 「부패Zero! 클린전북!」